

「군포도시공사 시민행복 참여위원회」 운영내규를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군포도시공사 사장 원 명 희



2020년 11월 4일

군포도시공사 내규 제38호

군포도시공사 시민행복 참여위원회 운영내규

제1조(목적) 이 내규는 군포도시공사(이하 “공사”라 한다)의 시민참여 경영체제 확립과 시민만족 경영활동 전개를 위한 시민행복 참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역할수행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.

1. 공사의 경영 및 정책 참여로 공사 발전 방안에 관한 사항
2. 공사 각 사업장의 고객서비스 품질 향상에 관한 사항
3. 공사의 발전을 위한 정책 발굴, 아이디어 제공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

제3조(구성 및 임기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 등 총 3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본부장으로 하며, 당연직 위원은 노조위원장과 경영기획부장으로 한다. 위촉위원은 각계각층의 시민 및 전문가 중에 사장이 위촉한다.

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.

제4조(위원장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시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5조(간사 및 서기)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, 간사는 담당 팀장으로 하며 서기는 해당 담당 직원이 된다.

제6조(회의) ①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하며 사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 소집을 할 수 있다.

제7조(의결방법)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8조(수당지급) 위원회 개최 시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.

제9조(운영세칙) 이 내규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 칙

이 내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 관 부 서		경 영 기 획 부
입 안	직 위 성 명	경 영 기 획 부 장 이 현 동
	직 위 성 명	경 영 전 략 팀 장 박 인 희
자	담당자 성명 (전 화)	이 은 영 (390-7616)